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정계 처분을 받은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